계약학과 운영 매뉴얼

2023. 05.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목 차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운영 프로세스 ····· Ⅰ

계약학과(재교육형) 운영 프로세스 ····· Ⅱ

계약학과(혼합형) 운영 프로세스 ····· Ⅲ

1.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 1

2.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운영협약체결 ····· 3

3.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 5

4. 교육과정 개발 ····· 8

5.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 11

6.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 20

7. 모집요강 ····· 29

8-1.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 34

8-2. 원서접수(입학자격, 재직여부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 36

9. 합격자 통보 ····· 38

10.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 ····· 39

11-1. 교육과정 운영(채용조건형) ····· 44

11-2. 교육과정 운영(재교육형) ····· 47

11-3. 교육과정 운영(혼합형) ····· 50

12. 자체점검 결과 보고 ····· 53

13.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 통보 ····· 58

14-1. 채용포기에 따른 학생 보호(채용조건형) ····· 60

14-2. 퇴직에 따른 학생 보호(재교육형) ····· 63

14-3. 채용포기 및 퇴직에 따른 학생 보호(혼합형) ····· 64

15. 학생-산업체 재매칭 ····· 70
16. 교육과정 운영 완료 ····· 72
17. 학생-산업체간 근로계약 체결 ····· 73
18. 계약학과 운영 검토 ····· 74
19.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 75
20.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 81
21.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82

별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별표 및 서식 ····· 83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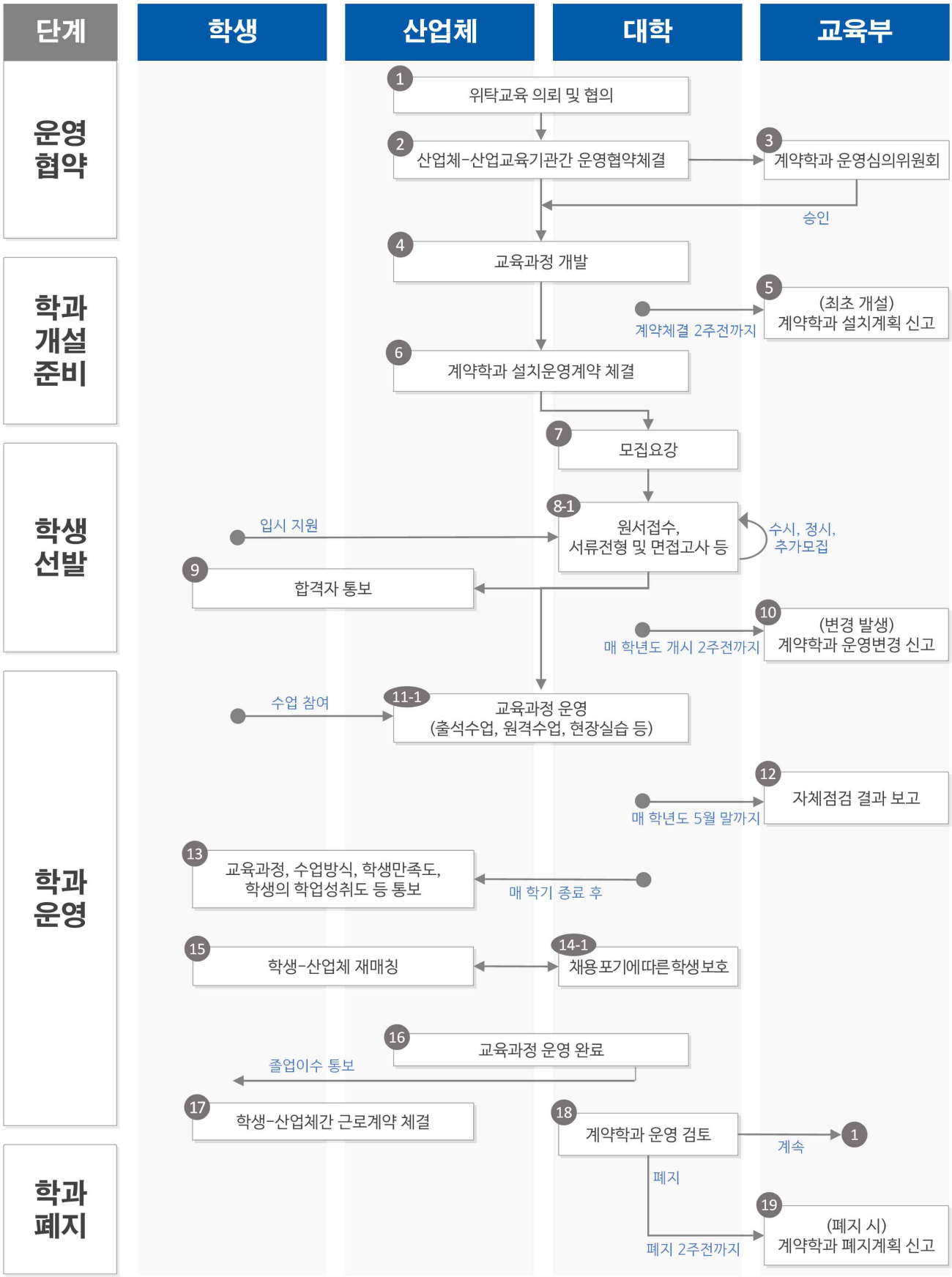

계약학과(재교육형)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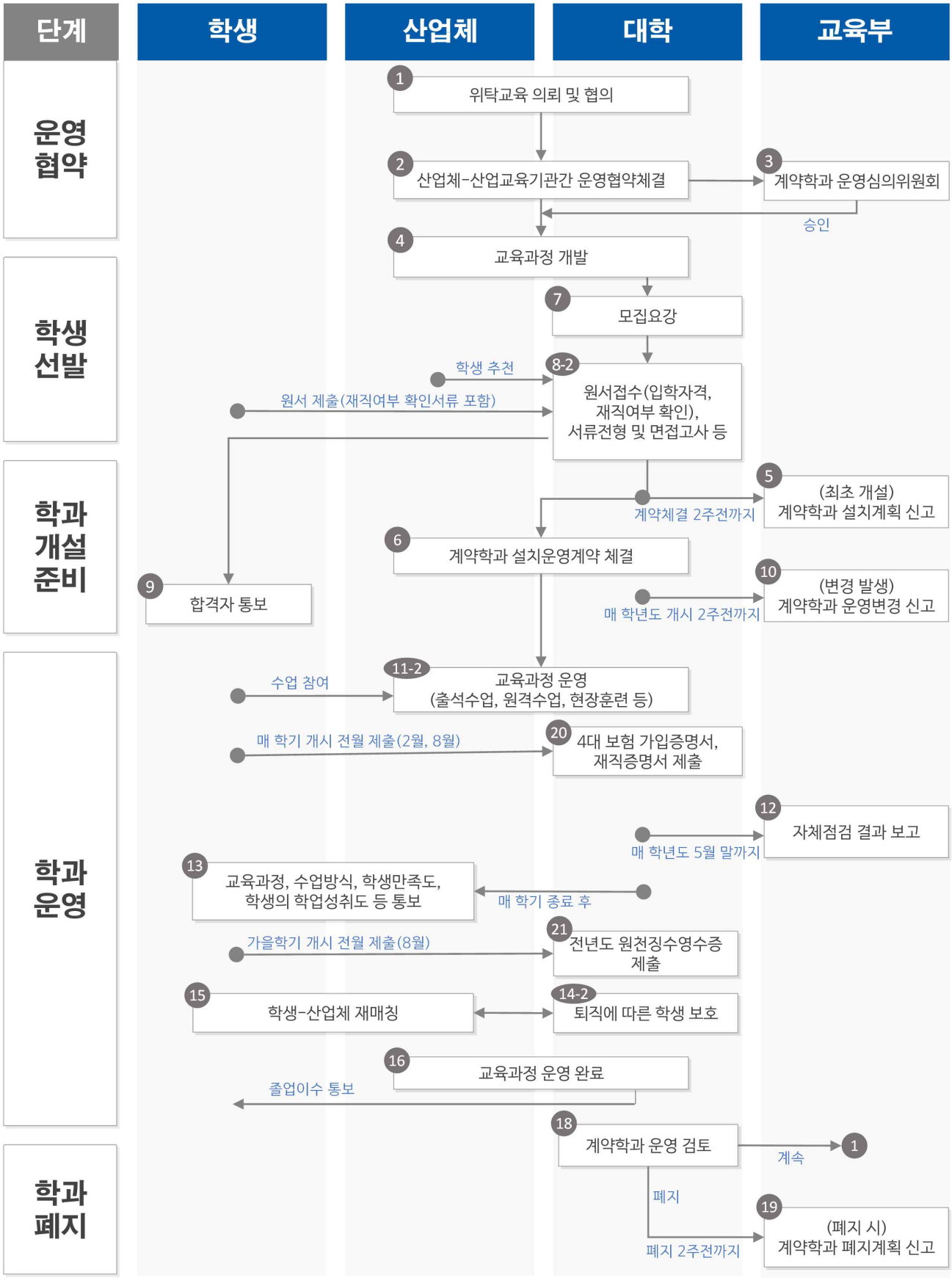

계약학과(혼합형)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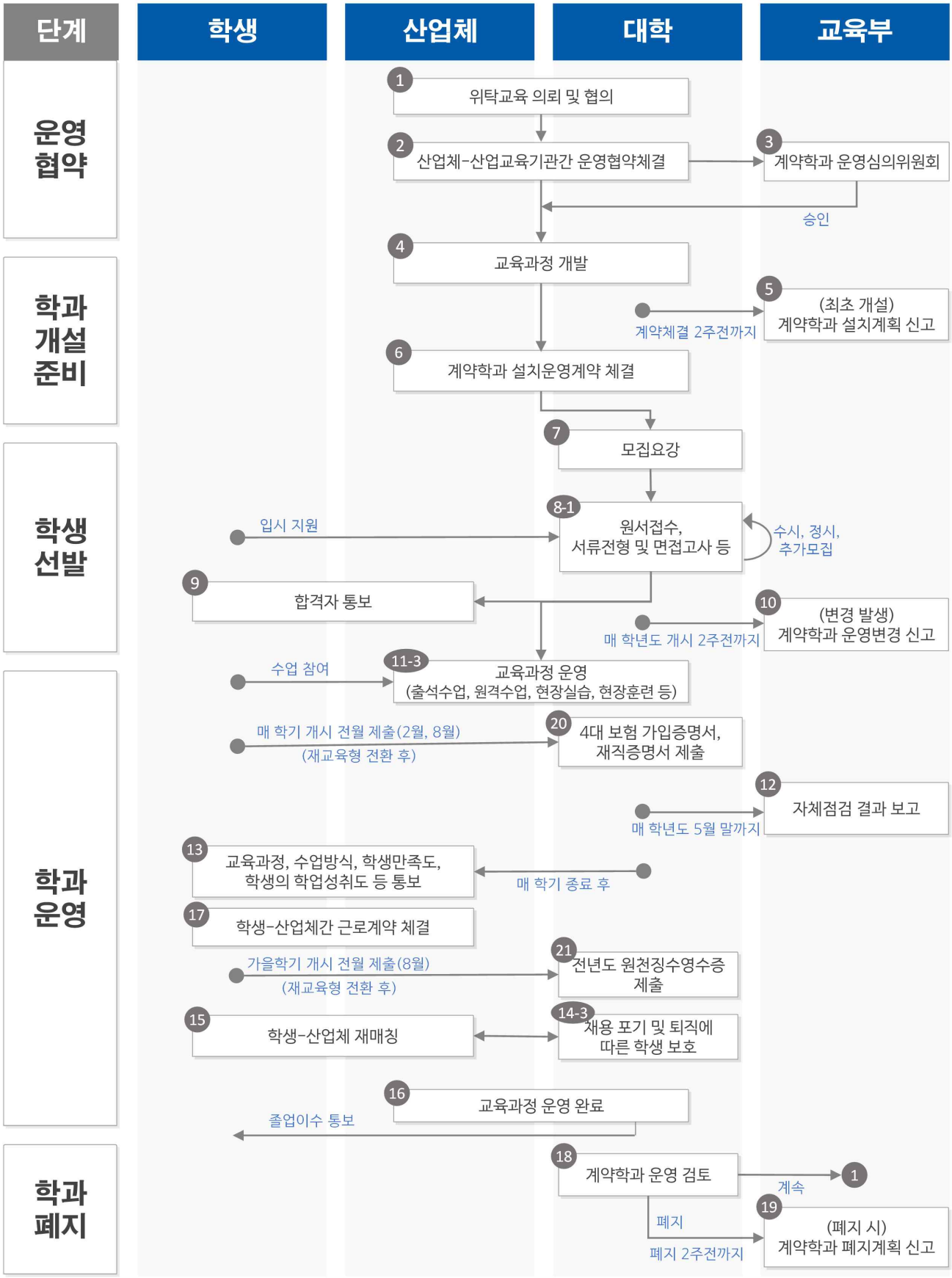

들어가며

이 매뉴얼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에 관한 매뉴얼이며, 2023년 5월 22일 기준의 관련 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매뉴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1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1.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 산업체는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대학도 산업체와 계약학과 개설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체와 대학은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의 업무 연관성, 계약학과 설치요건, 계약학과 유형 등을 검토해야 함

1.1 산업체 범위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상시근로자 5명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1.2 계약학과 의뢰 유형

유형	개념	입학정원	산업체 부담금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의뢰(법 제8조제1항1호)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문의 20 이내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영 제8조제5항1호)	등록금이 포함된 총 교육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 부담(영 제8조제6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가능(영 제8조7항) ※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정원 계약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뢰(영 제8조의2제1항)	우선 적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영 제8조의2제2항)	
재교육형 계약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의뢰(법 제8조제1항2호)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영 제8조제5항2호)	
혼합형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 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규정 제18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규정과 동일	

2 산업체-산업교육기관간 운영협약체결

1. 계약학과 운영협약체결

□ 산업체와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협의 후에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협약서에는 계약학과 구성, 학생선발, 교육과정, 학비부담, 협약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음

1.1 학생선발

□ 대학은 산업체의 계약학과 의뢰 유형(채용조건형(계약정원 포함), 재교육형, 혼합형)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채용약정, 재직여부 등)을 위해 산업체와 협약하여야 함

1.2 모체학과

□ 모체학과는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함

□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산업체와 운영협약체결 시 모체학과는 계약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고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함

1.3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률 협의

□ 학비 및 필요경비는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과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의 부담률을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음

○ 필요경비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

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하면 모체학과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과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계약학과 운영협약서 예시>

대학-산업체간 ○○○○ 계약학과 운영협약서

○○○대학교와 ㈜○○○○은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제2조(기관의 역할)

제3조(협약의 내용)

① (학과구성)

② (학생선발 및 채용약정)

③ (교육과정)

④ (학비지원 또는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제4조(협약기간)

제5조(상호협력사항)

제6조(기타)

○○○○년 ○월 ○일

○○○○대학교 (주)○○○○

총장 ○ ○ ○ **(직인)** **대표자 :** ○ ○ ○ **(직인)**

3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1.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 대학의 특성과 산업 여건의 변화 등 여러 상황에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계약학과의 심의를 위해서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대학과 산업체는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학과개설 준비 및 학생선발 단계를 진행해야 함

2.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내용(운영 규정)</th><th>심의요청</th></tr>
<tr><td>권역제한 완화
(재교육형만 해당)</td><td colspan="2">•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와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를 동일 권역으로 구분
•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구분</td><td>대학이 동일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역제한 완화’ 심의를 요청해야 함</td></tr>
<tr><td rowspan="2">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재교육형만 해당)</td><td colspan="2">• 산업체 소속직원이 ‘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학사 학위과정’의 계약학과 학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입학일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의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함</td><td rowspan="2">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10개월 미만인 산업체 소속 직원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직요건 기준 완화’ 심의를 요청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규정 14조제4항)</td></tr>
<tr><td>경력 산정</td><td>•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의 재직경력만 인정</td></tr>
</table>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 (재교육형만 해당)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각각 산정 (영 제8조제5항제1호, 제2호) •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	대학은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을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 그 밖의 계약학과 설립·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1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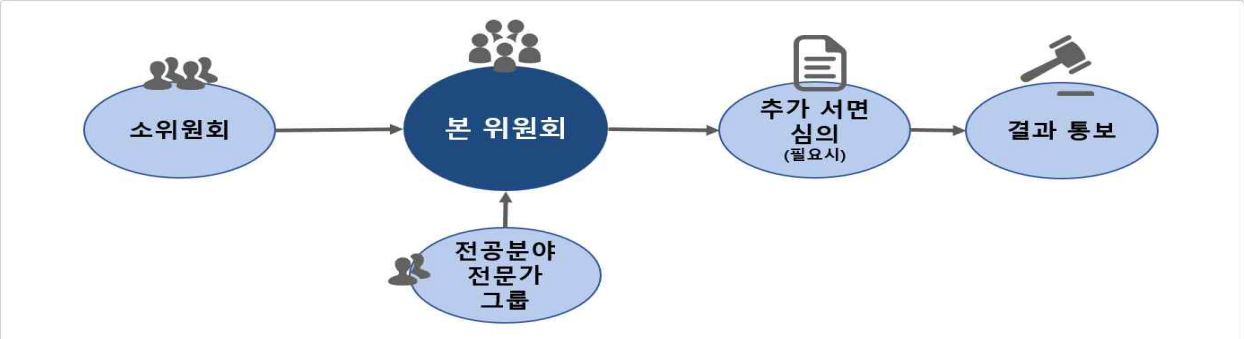

3.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심의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 교육계·산업계·정부기관·여성계·기타 각 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산업계 대표는 3인 이상 반드시 포함 • 교육부장관이 위촉
심의위원회 위원장	•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심의위원의 임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심의위원회 간사	•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1명) • 교육부장관이 지명

3.2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구분	내용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 긴급 결정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 가능
안건 의결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이 출석해야 함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척	• 심의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 불참
기피	• 해당 기관의 심의와 위원장 또는 심의위원의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 가능 •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4. 소위원회

□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는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4.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소위원회 구성	•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
소위원회 위원장	•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소위원회 개최 및 출석	• 소위원회 위원 4명 전원출석으로 안건 심의 • 서면 개최 가능
심의 결과에 따른 자료 제출	•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교육과정 개발

1. 협약 참여기업 및 요구교과목 조사

1.1 참여기업 현황 파악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개발은 모체학과에서 담당하지만(규정 제2조제2항), 모체학과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어야 하며(규정 제10조제2항),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참여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규정 제17조제1항)

○ 해당 계약학과의 해당 학년도 신입생을 대학과 공동 선발할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

- 기업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주소, 근무지, HRD 등 기업 담당자 및 연락처, 주요 사업, 요구 직무 등을 목록에 포함

1.2 참여기업 요구교과목 조사

□ 대학은 해당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목록과 요구 직무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Tools)과 요구교과목을 조사

○ 대학은 참여기업과 간담회, 설문조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요구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파악하고 회의록, 설문 결과 분석 보고서 등 근거를 남김

2. 교육과정 개발

□ 대학은 조사된 참여기업의 요구교과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편 또는 개발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해당 계약학과의 설치 배경 및 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 교과과정 체계도, 교과목명, 교과목의 개설 학년 및 학기, 교과목별 학점 및 시수(이론/실습), 이수 구분(교양/전공, 선택/필수 등),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현장훈련수업, 이동수업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구분하여 기

재, 교과목 개요 등

-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규정 제17조제2항)

□ 대학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반드시 산업체 등과 연 1회 이상 협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학과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칙에서 정하여 구성하며(규정 제24조제1항),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규정 제24조제2항)

○ 만일 신설학과로 아직 학과가 개설되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음

3. 교육과정의 활용

3.1 교육부 보고

□ 개발한 교육과정은 교육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 가능

○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시

○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 시

3.2 교육과정 정보 제공

□ 대학은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후 요람으로 제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대상 학생과 참여기업에 배포

□ 교육과정 체계도를 대학의 해당 계약학과 홈페이지에 게시

□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사관리 관련 시스템에 입력

3.3 이동수업 승인 시

□ 이동수업에 대한 승인 신청 시 개발된 교육과정 활용

○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규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5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1. 제출양식 및 작성 요령 확인

□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규정 제10조제1항)

○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1])과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확인

- 신고서는 신설하려는 계약학과별로 작성해야 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일관된 작성 요령 숙지
-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1부
- 신고서 첨부서류:
  -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 1부
  -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계약서안 1부

2.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 작성

□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1])은 다음과 같이 크게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과 기본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에 대해서 ①~⑥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① 계약형태 √체크 :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의 3개 중 체크(단독계약은 산업체가 1개일 때, 공동계약은 산업체가 2개 이상일 때, 제3자계약은 사업주 단체와 계약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명 : 대학명을 기재(예: OOO대학교)
- ③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 대학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되, 별도의 캠퍼스로 운영하는 경우 캠퍼스의 주소를 기재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1] (제10조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등 설치 · 운영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

❶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 · 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❷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❸
계약학과 · 학부명 ❹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 · 학부명	❺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❻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기본 정보

❼유형	❽ 입학정원	❾계약기간	❿취득학위	⓫ 신/편입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계약학과 · 학부 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편입과정*
[ ] 계약정원	일반학과 · 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⓬계약학과 · 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비고: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계획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 ④ 계약학과·학부명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명칭을 기재
- ⑤ 참여 기관 수와 참여 기관 정보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신입생 선발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의 수를 기재하고, [별첨] 참여 기관 정보 양식을 활용하여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기관 소재지를 작성
- ⑥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의 [별표 1]을 참고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

○ 기본정보에 대해서 ⑦~⑫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⑦ 유형 :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중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혼합형의 경우 채용조건형에 체크
- ⑧ 입학정원 : 대학의 학칙에 반영된 정원을 기준으로 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일 경우, 대학 전체 입학정원(대학원 포함)과 해당 신설학과의 입학정원을 기재하고, 계약정원일 경우, 일반학과·학부의 정원과 계약정원을 각각 기재
- ⑨ 계약기간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전체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초 개설 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시점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기재
- ⑩ 취득학위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학위는 학칙에 반영된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되, 학위의 종류와 분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예: 전문학사, 공학사, 공학석사 등)
- ⑪ 신/편입 : 신입과정 또는 편입과정 중 선택하여 기재
-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동수업 실시에 대해 학칙 반영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에 √체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⑫ 계약학과·학부 경비 부담 비율 : 등록금, 기타 경비, 경비 총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항목에 대해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작성(혼합형의 경우, 계약학과 유형의 변동에 따라 주체별 부담비율이 달라질 시 이를 구분하여 명시)
  • 참여 기관 부담 : 참여 기관의 부담비율은 외부기관의 지원이 없는 한, 반드시 50% 이상으로 기재하되, 대학의 장학금 감면 후의 비율이 아닌 등록

금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작성.

• 외부기관 지원 : 정부,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비율 기재

• 대학 자체 감면 : 대학에서 일괄 자체 감면하고 있는 비율을 기재

• 학생 부담 : 50% 이하로 기재하되, 대학 자체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경비의 50% 이하로 기재

• 참여 기관 부담+외부기관 지원+대학 자체 감면+학생 부담 = 100%가 되도록 작성

• 외부기관 지원 시 : 외부기관명, 사업명을 기재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 4종을 재확인하고 작성 및 준비

	서류명	
첨부서류	1.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획서 작성

□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다음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개발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작성

□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는 7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계약학과 설치 개요

- ① 계약학과·학부 명 : 신고서의 ④와 일치하게 기재
- ② 계약학과·학부 영문명 : 학칙에서 정한 영문명 기재
- ③ 모체학과명: 계약학과·학부의 기반이 되는 모체학과명을 기재
- ④ 학위명 : 신고서의 ⑩과 일치하게 기재하고 ( )안에 학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학위명을 기재(예: 공학사, 이학사 등)
- ⑤ 계약기간 : 신고서의 ⑨의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기재
- ⑥ 설치유형 : 신고서의 ⑦과 일치하게 기재

<예시 양식>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계획서

1. 계약학과 설치 개요

계약학과 · 학부명 ①		③ 모체 학과명	
계약학과 · 학부 영문명 ②		④ 학위명	
⑤ 운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⑥ 설치유형	□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 계약정원
⑦ 입학구분	□ 신입 □ 편입	⑧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
⑨ 입학정원	00명 (정원내 0명, 정원외 00명)	⑩ 학습구분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주간 □ 야간 □ 주말
⑪ 참여 기관 수		⑫ 교육장소	
⑬ 참여 기관 정보	참여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기관 소재지 등(신고서의 별첨으로 대체 가능)		
⑭ 교육과정 체계도			
⑮ 참여 전임교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 ⑦ 입학 구분: 신고서의 ⑪과 일치하게 기재
- ⑧ 계약 형태 : 신고서 ①의 계약 형태와 일치하게 체크
- ⑨ 입학정원: 신고서의 ⑧과 일치하게 기재하되,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인원수 작성

- ⑩ 학습구분 : 교육과정 운영 시 교과목 개설을 주간, 야간, 주말 중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시 모두 체크
- ⑪ 참여 기관 수 : 신고서의 ⑤와 일치하게 기재
- ⑫ 교육 장소 : 대학 또는 이동수업으로 승인된 외부장소 등 해당 교육 장소의 명칭 기재
- ⑬ 참여 기관 정보 : 신고서의 [별첨]에 작성한 참여 기관 정보 중 참여 기관명만 작성하고, 신고서의 [별첨]으로 대체
- ⑭ 교육과정 체계도 : 개발된 교육과정의 체계도를 그림으로 삽입(학년, 학기, 교과목명 등 구성도)
- ⑮ 참여 전임교원 명단 : 해당 계약학과의 운영 및 수업을 담당할 모든 전임교원의 명단을 소속, 직위, 성명과 함께 기재

○ 계약학과 설치 배경 및 목적
- 설치 배경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치하는 과정인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는 과정인지 등에 대해 기술

○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 개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작성

○ 교육의 시설과 교육장 활용 계획
- 강의실 및 실습실의 호실 또는 명칭과 사진을 표로 첨부
- 교육과정 편성계획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시설설비, 실험·실습장비·교육기자재 등 매칭

○ 학생 선발방법 및 계획
- 계약학과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학생선발 관련 규정 확인(규정 제16조, 제18조제1항)
  - 채용조건형 및 계약정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

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규정 제16조제1항).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혼합형의 학생선발은 채용조건형의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

- 재교육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함.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음(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면접고사, 신체검사)((규정 제16조제2항)

- 해당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선발하는 것인지 또는 학칙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지 등에 대해 작성
  -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기본사항 준수(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모집요강(안)을 제시 : 대학소개, 전형유형 및 주요 전형요소, 모집학과소개,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정원 내·외 명시),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일정 등(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함, 규정 제16조제3항)

○ 학사관리계획(규정 제17조)

- 출석수업(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원격수업(규정 제19조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현장훈련수업 등의 학사운영 및 관리 계획 작성(학사관리시스템, 원격수업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상담시스템 등)

- 이동수업(규정 제20조)의 경우, 이동수업의 학사관리 계획을 별도로 작성
- 그 외 학과장,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 참여 계획(매 학년도 학과별 30% 이상), 산업체 교원 참여 계획 등

○ 교육과정 편성계획

- 이수학점 : 신입/편입 구분, 총 학점, 전공학점, 교양학점 등의 항목을 표로 작성

구 분	총 학점	전공학점	교양학점
신입/편입			

- 교육과정 편성 :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이론, 실습), 비고 등의 항목에 대해 아래 <예시> 표와 같이 작성

<예시>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습	
계							

* 비고에는 온라인수업, 현장실습수업, 현장훈련수업(OJT), 이동수업 등 특성 표기

- 편성교과목 개요 : 앞의 편성된 교과목명의 순서대로 예시와 같은 표를 활용하여 작성

<예시>

교과목명	국문	
	영문	
주 요 강의내용		
교과목명	국문	
	영문	
주 요 강의내용		

4. 학교규칙 개정안(첨부서류 2) 준비

□ 해당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규칙(학칙)을 문서로 준비

5. 계약서안(첨부서류 4) 작성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에 의해 대학과 산업체 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에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규정 제11조제1항)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 학사 운영에 따른 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

○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은 필요에 따라 산업체와 대학의 협의를 통해 항목 추가

6. 기관장 직인 날인 및 제출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대학의 총장으로 기재

□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

6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1. 계약서 포함 내용 확인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과 산업체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시 제출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확인

□ 다음 10가지 사항을 계약서 내용에 기재하여야 함을 확인(규정 제11조제1항)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 학사 운영에 따른 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

○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2. 계약학과 유형별 계약서 작성

2.1 채용조건형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 대학명과 산업체 명을 작성한 후, 제2조, 제8조, 제13조 특수조건, 하단의 계약체결일, 대학과 산업체의 주소, 대표자명을 작성

○ 제2조의 학습구분에는 주간으로 명시하고, 제8조의 산업체 부담비율이 학생의 성적에 따라 달리 지원되는 경우 추가 명시 필요

<채용조건형 계약서 예시>

[예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채용조건형)

OOO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OOO(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OOO대학교 학칙에 의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산업체"와 공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류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제3조(학생선발) 입학대상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의 선발방법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한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각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OOO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한다.

제8조(경비 부담 등)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부담비율 : 00%
2. 학생 부담비율 : 00%
③ "대학"은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

제9조(제적처리 및 학생보호)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하기 전 산업체의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학점의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①"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대학"은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OOO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특수조건) 실제 특수한 상황을 기재 필요(대학이 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OOO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OOO대학교
OO도 OO시 OO로 111

총 장 O O O (직인)

업체명 _____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2.2 재교육형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15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재교육형 계약서 예시>

[예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재교육형)

OOO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OOO(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OOO대학교 학칙에 의거 재교육형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OOO, OOO)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제3조(학생선발 및 입학) 입학대상자는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의 입학자격과 "대학"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훈련수업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OOO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의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부담비율 : 00%
2. 학생 부담비율 : 00%

③ "대학"은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부담

금을 산정하면 안된다.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통보받은 학생 중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①"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대학"은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OOO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학생 보호) ① 이 계약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제14조(특수조건) 실제 특수한 상황을 기재 필요(대학이 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15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OOO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OOO대학교
OO도 OO시 OO로 111
총 장 홍 길 동 (직인)

업체명 _____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첨부: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재교육형에 한함. 규정 제11조제2항)

○ 대학명과 산업체 명을 작성한 후, 제2조, 제8조, 하단의 계약체결일, 대학과 산업체의 주소, 대표자명을 작성

○ 제1조의 산업체의 소속 직원명은 계약체결 시 추천한 직원이 대학의 학생선발 절차에 따라 최종합격 후 작성

○ 제8조의 산업체와 학생 부담비율 작성 시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체 지원으로 간주하여 작성

○ 제14조의 특수조건은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한 실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건을 기재

○ 다른 유형과 달리 재교육형의 계약서에는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함

2.3 혼합형

□ 혼합형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15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혼합형은 교육과정 중간에 채용조건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하므로 계약서의 제8조(경비 부담),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제13조(학생보호)의 내용 검토 필요

○ 대학명과 산업체 명을 작성한 후, 제2조, 제8조, 하단의 계약체결일, 대학과 산업체의 주소, 대표자명을 작성

○ 제8조의 산업체와 학생 부담비율 작성 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체 지원으로 간주하여 작성

○ 제14조의 특수조건은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한 실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건을 기재

<혼합형 계약서 예시>

[예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혼합형)

OOO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OOO(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OOO대학교 학칙에 의거 혼합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배양하고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산업체"와 공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 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류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제3조(학생선발) 입학대상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의 선발방법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한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각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산업체"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OOO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한다.

제8조(경비 부담 등) ① 혼합형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산업체" 부담비율 : 00%, 학생 부담비율 : 00%
2. 재교육형: "산업체" 부담비율 : 00%, 학생 부담비율 : 00%
③ "대학"은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

제9조(제적처리 및 학생보호)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채용조건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할 때 당초 채용약정기관으로 채용되지 않은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재직 시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통보받은 학생 중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①"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대학"은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OOO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학생 보호) ① 이 계약서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재교육형으로 전환된 후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일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서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제14조(특수조건) 실제 특수한 상황을 기재 필요(대학이 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15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OOO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OOO대학교 업체명 _____
OO도 OO시 OO로 111 주 소 _____

총 장 O O O (직인) **대표자** _____ (직인)

3.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및 대표자 확인

□ 해당 학년도 계약학과 참여기업 목록 및 대표자 목록 작성(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산업체 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산업체와 대학의 순서를 교차한 2개 버전으로 작성) → 산업체와 대표자명이 계약서 하단의 좌측에 작성된 파일을 산업체에 검토 요청(이메일) → 확인 및 수정 후 계약체결 → 산업체와 대학이 1부씩 보관

7 모집요강

1. 채용조건형 및 혼합형

1.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혼합형도 채용조건형으로 선발하므로 동일 적용)

○ 또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 참여를 보장해야 함

관련 법, 시행령, 규정	세부 조항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1조의2(입학사정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학전형자료)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22. 2. 28.>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제출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공표해야 함

<예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제출 시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하므로 2025학년도 입학생의 기본사항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공표
- 대학은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2025학년도 입학생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 2023년 3월 31일(금)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입력하고 2023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함

1.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및 심의·조정

□「고등교육법」제34조의5제6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함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

과폐지,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학의 학교규칙(학칙)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변경 신청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

- 해당 학년도가 개시되기 10개월 전인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함

1.3 모집요강 작성

□ 전년도에 제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심의·조정 결과의 확인(대교협에서 대학에 통보)

□ 대학의 “입학관리위원회” 승인 → 모집요강의 편제 공통화 권장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해당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음*

<모집요강 편제>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Ⅱ.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Ⅲ. 전형별 모집인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Ⅴ. 세부 전형별 안내
OOOOO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 동점자 처리기준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대학 선택)
Ⅵ.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정시: 수능 반영방법
학생부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 대학별 유의사항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Ⅸ. 전형료
Ⅹ. 학사안내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P.50, 2022.8.

1.4 모집요강 공표

□ 대교협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전형일정 등)을 취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대교협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대교협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전형유형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모집단위(계열)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대학별고사 평가기준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2. 재교육형

2.1 모집요강 관련 요건 확인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해 학생선발 방법을 확인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진행하므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모집요강을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 후 공표해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전형방법은 산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의해 따로 정함

관련 법, 시행령, 규정	세부 조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8. 6. 5.>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본조신설 2000. 11. 28.]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제2항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2.2 모집요강 작성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요강은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시 설정한 전형방법과 학칙에 의한 선발 방법을 반영하여 작성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요강은 구성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학생선발 시 제공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집요강에 수록
- 전형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입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설정

2.3 모집요강 공표

□ 대학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 요강을 대학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재직자를 추천하여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에 모집요강 제공(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8-1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 아래 설명한 내용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학년도 실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 원서접수

□ 채용조건형과 혼합형의 원서접수는 대학의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시기에 맞춰 진행

○ 수시모집 : 매년 9월 초

○ 정시모집 : 매년 12월 말~1월 초(수시 이월 포함)

○ 추가모집 : 매년 2월 말(정시모집의 등록 완료 후 정시 이월)

□ 원서접수는 대학이 지정한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진행

○ 단독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접수: 학과 단위 접수

○ 복수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접수: 학과 선택 → 기업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기업 단위 접수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자에게 통보 및 전형에서 제외

2. 서류전형

□ 대학 내 입학 관련 부서의 입학사정관이 평가 요소(항목)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정

□ 학과별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서류평가위원 등 포함)을 임명 → 서류평가 방법 교육

□ 서류평가 장소 섭외 → 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원자의 서류전형 자료 업로드

□ 모집요강에 명시한 전형자료만을 활용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하되 블라인드 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함

○ 1명의 지원자에 대해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서류전형을 진행 → 평가자 간의 서류평가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서류평가 재진행

□ 서류합격자 발표(대학 홈페이지, 지원자 개별 통보 등)

○ 모집요강에서 공표한 배수에 따라 서류합격자 수 결정

3. 면접전형

□ 대학 내 입학사정관이 면접 평가의 요소 및 방법 설정

□ 모집요강에 공표한 면접 일정의 면접 장소 섭외 및 면접평가시스템 구축

□ 학과별 면접관(면접위원)을 임명

○ 대학 내 면접관 임명(일반적으로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을 포함)

○ 산업체 면접관 섭외 및 임명

○ 대학 및 산업체 면접관 교육 일정 수립 및 교육 진행

□ 면접시간표 작성 → 면접관 참여 가능 일정 재확인 → 면접시간표 수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일자, 시간, 장소 개별 통보

□ 면접집행자, 감독관, 관리자 등 임명

□ 면접 진행 → 면접 평가 결과 확인 → 산업체에 채용확약서(산업체 직인 날인,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포함) 제출 요청*

** 단독기업일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로 대체 가능*

□ 합격자 명단 확인 → 대학 내 입학관리위원회 승인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대학 내 홈페이지 및 면접 참석자 개별 통보 등

□ 최초합격자 등록 → 결원 시 예비합격자 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

8-2 원서접수(입학자격, 재직여부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 아래 설명한 내용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학년도 실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 원서접수

□ 대학은 운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로부터 소속직원을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추천받고 입학원서를 제출받아 입학자격 충족여부와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운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소속직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됨

1.1 입학자격

□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 자

□ 대학과 계약을 맺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 충족 재직요건

구분	내용
재직기간	• 계약학과 입학일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함
재직경력 산정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의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산정(고등학교 재학 동안의 재직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근로 유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함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제14조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직요건을 달리 할 수 있음

1.2 재직여부 확인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 확인

□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2. 학생선발

□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함

2.1 학생선발 대상

□ 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선발

2.2 학생선발 방법

□ 서류전형, 면접고사, 신체검사에 의해 선발하되 대학에서 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 가능

9 합격자 통보

1. 합격 통보

1.1 채용조건형(계약정원 포함) 및 혼합형

□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 체결 후에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

□ 학생선발 과정에서 학생은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대학에 입시지원

□ 합격 여부는 학생과 채용을 약정한 산업체 모두에게 통보

1.2 재교육형

□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체로부터 계약학과 학생을 추천받고 입학원서를 제출받아 학칙으로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

□ 합격 여부는 학생과 채용을 약정한 산업체 모두에게 통보

10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

1. 제출양식 및 작성 요령 확인

□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 시에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제2항)

○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2])과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확인

- 신고서는 운영의 변경이 필요한 계약학과별로 작성해야 하므로 변경이 발생한 학과의 학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일관된 작성 요령 숙지
-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서 첨부서류:
  -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1부
  -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계약서안 1부

2.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 작성

□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2])은 다음과 같이 크게 계약학과 기본정보와 변경 신고내용으로 구성

○ 계약학과 기본정보에 대해서 ①~⑬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① 계약형태 √체크 :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의 3개 중 체크(단독계약은 산업체가 1개일 때, 공동계약은 산업체가 2개 이상일 때, 제3자계약은 사업주 단체와 계약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명 : 대학명을 기재(예: OOO대학교)
- ③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 대학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되, 별도의 캠퍼스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의 주소를 기재
- ④ 계약학과·학부명 : 기존 계약학과의 운영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약학과명 기재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2] (제10조 관련)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❶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❷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❸	
	계약학과·학부명 ❹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❺ -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❻ 모체학과 명 / 정원 000학과 / 00명	❼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계약학과 기본정보

❽ 유형	❾ 입학정원	❿ 계약기간	⓫ 취득학위	⓬ 신/편입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계약학과·학부 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편입과정*
[ ] 계약정원	일반학과·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⓭ 계약학과·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❶❹ 변경 신고 내용

○ 변경 항목 :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 ⑤ 참여 기관 수와 참여 기관 정보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신입생 선발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의 수를 기재하고, [별첨] 참여 기관 정보 양식

을 활용하여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기관 소재지를 작성

- ⑥ 모체학과명 / 정원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명과 정원을 기재하되, 모체학과가 1개 이상의 융합일 경우에는 모든 모체학과명 기재
- ⑦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의 [별표 1]을 참고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
- ⑧ 유형 :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중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혼합형의 경우 채용조건형에 체크
- ⑨ 입학정원 : 대학의 학칙에 반영된 정원을 기준으로 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일 경우, 대학 전체 입학정원(대학원 포함)과 해당 신설학과의 입학정원을 기재하고, 계약정원일 경우, 일반학과·학부의 정원과 계약정원을 각각 기재
- ⑩ 계약기간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전체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초 개설 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시점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기재
- ⑪ 취득학위 : 신설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학위는 학칙에 반영된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되, 학위의 종류와 분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예: 전문학사, 공학사, 공학석사 등)
- ⑫ 신/편입 : 신입과정 또는 편입과정 중 선택하여 기재
-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동수업 실시에 대해 학칙 반영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에 √체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동수업 실시에 대해 학칙 반영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에 √체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⑬ 계약학과·학부 경비 부담 비율 : 등록금, 기타 경비, 경비 총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항목에 대해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작성(혼합형의 경우, 계약학과 유형의 변동에 따라 주체별 부담비율이 달라질 시 이를 구분하여 명시)
  - 참여 기관 부담 : 참여 기관의 부담비율은 외부기관의 지원이 없는 한, 반드시 50% 이상으로 기재하되, 대학의 장학금 감면 후의 비율이 아닌 등록

금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작성.

• 외부기관 지원 : 정부,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비율 기재

• 대학 자체 감면 : 대학에서 일괄 자체 감면하고 있는 비율을 기재

• 학생 부담 : 50% 이하로 기재하되, 대학 자체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경비의 50% 이하로 기재

• 참여 기관 부담+외부기관 지원+대학 자체 감면+학생 부담 = 100%가 되도록 작성

• 외부기관 지원 시 : 외부기관명, 사업명을 기재

○ 변경신고 내용에 대해서 ⑭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변경 항목 :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변경 항목을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으로 기재
- 변경 내용 : 변경 내용을 (기존)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간략하게 작성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 4종에 대한 재확인 및 준비

	서류명	
첨부서류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3.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준비(첨부서류 1)

□ 해당 계약학과의 최초 개설 시 제출한 설치계획 신고서를 확인하여 준비

4. 학교규칙 개정안 준비(첨부서류 2)

□ 해당 계약학과에 대해 추가로 개정한 학교규칙(학칙)을 문서로 준비

5. 계약서안 작성(첨부서류 4)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은 필요에 따라 산업체와 대학의 협의를 통해 항목 추가 가능

□ 규정 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에 의해 기존에 대학과 산업체 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계약서의 조항 및 내용 변경 발생 시 변경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을 준비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에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제1항)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 학사운영에 따른 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

○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6. 기관장 직인 날인 및 제출

□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대학의 총장으로 기재

□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

11-1 교육과정 운영(채용조건형)

1. 채용조건형 교육과정

□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되 산업체와 연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의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은 모체학과가 담당

□ 모체학과는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2. 수업

<table>
<tr><th>수업 형태</th><th>내용</th></tr>
<tr><td>출석수업</td><td>•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 편성(졸업학점 기준)
※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td></tr>
<tr><td>원격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
•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td></tr>
<tr><td>현장실습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운영</td></tr>
<tr><td>이동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대학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음
<table>
<tr><th>구분</th><th>적용</th></tr>
<tr><td>교사(校舍)</td><td>• 산업체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로 활용 가능</td></tr>
</table>
</td></tr>
</table>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 가능
	운영 및 승인	•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동수업 장소	•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함
	이동수업 교과목	•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해야 하며 본교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야 함

3. 교원

구분	내용
교원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학점기준) ※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4. 학사관리

4.1 학사운영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계약으로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만「고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대학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산업체에 알려야 함

4.2 운영위원회

구분	내용
역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설치 및 운영	대학 내에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구성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

11-2 교육과정 운영(재교육형)

1. 재교육형 교육과정

□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되 산업체와 연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훈련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의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은 모체학과가 담당

□ 모체학과는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2. 수업

<table>
<tr><th>수업 형태</th><th>내용</th></tr>
<tr><td>출석수업</td><td>•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 편성(졸업학점 기준)
※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td></tr>
<tr><td>원격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
•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td></tr>
<tr><td>이동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대학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음
<table>
<tr><th>구분</th><th>적용</th></tr>
<tr><td>교사(校舍)</td><td>• 산업체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로 활용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 가능</td></tr>
<tr><td>운영 및 승인</td><td>•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td></tr>
<tr><td>이동수업 장소</td><td>•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함</td></tr>
<tr><td>이동수업 교과목</td><td>•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해야 하며 본교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야 함</td></tr>
</table>
</td></tr>
<tr><td>현장훈련수업</td><td>• 기업 현장교수 및 대학의 지도교수를 지정해야 함
•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수립
• 학습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과 제출을 관리해야 함
• 대학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 부여
※ 재교육형의 출석수업은 학점인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영 제8조제10항, 규정 제22조)</td></tr>
</table>

3. 교원

구분	내용
교원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학점기준) ※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4. 학사관리

4.1 학사운영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계약으로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다만「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산업체에 알려야 함

4.2 학점인정 특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영 제8조제10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대학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대학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산업체 재직경력만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없음

관련 법, 시행령, 규정	세부 조항
영 제8조제10항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⑩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3 운영위원회

구분	내용
역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설치 및 운영	대학 내에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구성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

11-3 교육과정 운영(혼합형)

1. 혼합형 교육과정

□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되 산업체와 연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현장훈련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의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은 모체학과가 담당

□ 모체학과는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산업체(채용약정기관)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선발기준, 근무 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선발

□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산업체(채용약정기관)가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2. 수업

수업 형태	내용
출석수업	•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 편성(졸업학점 기준) ※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
원격수업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으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 •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
현장실습수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table>
<tr><td>이동수업</td><td>•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대학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음
<table>
<tr><th>구분</th><th>적용</th></tr>
<tr><td>교사(校舍)</td><td>• 산업체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로 활용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 가능</td></tr>
<tr><td>운영 및 승인</td><td>•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td></tr>
<tr><td>이동수업 장소</td><td>•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함</td></tr>
<tr><td>이동수업 교과목</td><td>•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해야 하며 본교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야 함</td></tr>
</table></td></tr>
<tr><td>현장훈련수업
(재교육형
계약학과)</td><td>• 기업 현장교수 및 대학의 지도교수를 지정해야 함
•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수립
• 학습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과 제출을 관리해야 함
• 대학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 부여</td></tr>
</table>

3. 교원

구분	내용
교원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학점기준) ※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4. 학사관리

4.1 학사운영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계약으로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다만「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산업체에 알려야 함

4.2 운영위원회

구분	내용
역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설치 및 운영	대학 내에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구성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

12 자체점검 결과 보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3조(자체점검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을 위한 양식 및 항목 확인

□ (개정안)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서식 확인(규정 [서식4])

○ 산업체(5개 항목)

○ 학생 관리(9개 항목)

○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3개 항목)

○ 신고 절차(4개 항목)

○ 학사관리(11개 항목, 이동수업 8개 항목)

○ 학칙 및 계약서(3개 항목)

○ 산업체 부담금(6개 항목)

2.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는 계약학과별로 작성

○ 자체점검 항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기한을 작성 → 연, 월, 일, 작성자, 확인자(총장) 정보 작성

○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는 작성자 서명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 직인 날인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4] (제13조 관련)

OO대학교 OOO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산업체	① 국가(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②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③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중복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3자 계약 체결인 경우, 실제 참여하는 해당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공동계약 체결, 공동계약 미체결 작성 / 공동계약 미체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 또는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 분야, 비유사 분야 작성 / 비유사 분야의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대학과 산업체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권역이 아닌 경우, 권역제한 완화에 대한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 관리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재교육형 계약학과) ☞ *충족, 미충족, 대학원과정(해당없음) 작성*			
	- 재직요건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사항 확인 여부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확인)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완료, 고지하지 않음 작성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의 인원이 일반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인지 확인 여부 ☞ *일반학과 입학정원 00명, 계약정원 0명 해당 인원수 작성*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운영 위원회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미설치 작성 / 미설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준수 여부(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연 1회 이상) ☞ *협의, 협의하지 않음 작성 /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신고 절차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변경계획 신고 준수 여부(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기간 종료, 재학생이 없는 경우 등 폐지신고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폐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 ☞ *개정, 미개정 작성/ 미개정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사 관리	출석수업 비중 준수 여부(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참여준수 여부(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의 학업상황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통보, 미통보 작성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미규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비중이 졸업학점의 50%를 초과하는 지 여부 (원격대학 제외) ☞ *미실시(해당없음), 초과, 초과하지 않음 / 초과하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 *운영, 미운영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학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인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타 권역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잘 갖추었는지 확인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비 확인, 구비하지 못함 작성 / 시설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장의 여건 확인, 본교와 이동수업 장에서의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미운영(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장의 산업체 무상제공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무상, 비용지급 여부 작성/ 비용지급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실습 실시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실시(표준, 자율현장실습 구분) 작성*			
	– 현장실습 운영 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준수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준수, 준수하지 않음 / 미준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여부 ☞ *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미구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현장훈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부여, 미부여 작성 /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미초과, 초과 부여 작성 / 초과하여 학점을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 학점을 부여한 경우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부여되었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칙 및 계약서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칙, 운영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준수, 미준수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 *명시, 명시하지 않음 작성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이상, 이하 작성 / 이하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부담금	산업체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산업체에 별도 청구하였는지 여부(공문 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 *청구, 청구하지 않음 작성 /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매학기 산업체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 *확인,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 *개별 정산(1명이라도 있을 시 작성), 해당 없음 작성 / 개별 정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산업체 등 부담 비율 작성 / 50% 미만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현물부담 비율이 필요경비의 30% 초과 여부 ☞ *현물부담 비율, 해당없음 작성 / 30% 초과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등에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지 여부 ☞ *안내, 안내하지 않음 작성 /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대학교 직위 ○○○ 서명

확인자 : ○○○ 대학교 총장 ○○○ 직인

13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 통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1. 학사관리의 정보 공유 항목 확인

□ 학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 제23조를 따름

□ 정보의 공유 대상 : 산업체, 학생

□ 공유 정보 항목 :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

□ 정보 공유 시기 : 매 학기 종료 후

2.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

2.1 매 학년도 초

□ 대학은 매 학년도 신입생(편입 포함)에게 대학 요람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

□ 그리고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한 산업체에 매 학년도 신입생이 이수할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계약학과 요람 인쇄 책자, 관리시스템, 이메일 등)

□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 관련 정보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 체계도

○ 교과목별 개요

○ 교과목별 개설 학기

○ 교과목별 학점 및 시수

○ 교과목의 수업방식(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현장훈련수업, 이동수업 등)

2.2 매 학기 종료 후

□ 대학은 학생에게 매 학기의 시작 또는 종료 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교과목을 학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

□ 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수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제공 가능

3. 학생 만족도

□ 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업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산업체에 제공

□ 또는 별도의 학생 만족도를 조사(설문 등)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학생과 산업체에 제공

4. 학생의 학업성취도

□ 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을 제공

○ 학생에게는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조회 또는 우편 발송 등

○ 산업체에는 학생의 성적표를 우편 등기 발송 등

14-1 채용 포기에 따른 학생 보호(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퇴직 등)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채용조건형의 채용 포기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포함)에서 산업체가 채용을 포기할 수 있는 요건은 규정 제26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음

○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체가 이와 같은 사유로 채용포기 시, 대학은 학생의 학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필요

2. 채용 포기 시 학생 보호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하기 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름

○ 취업 전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업체가 채용을 포기한 경우의 학생신분 유지 조건 확인(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

- 계약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학적 유지 가능
- 계약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한 경우 → 계약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 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학적 유지 가능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 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재매칭 필수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중분류 77개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꽃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	어업	031	해로 어업	0311	해수면 어업	03111	원양 어업
								03112	연근해 어업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기준으로 중분류 52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개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1	국회의원	6
								11102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 의원	
								11103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11104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1105	공공 기관 임원	
								11106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120	기업 고위 임원	11201	기업 대표이사	2
								1120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11	정부행정 관리자	12110	정부행정 관리자	1
						1212	경영 지원 관리자	12121	총무 및 인사 관리자	5
								12122	기획 관리자	
								12123	재무 관리자	
								12124	자재 및 구매 관리자	
								12129	그 외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1	마케팅 관리자	3
								12202	광고 및 홍보 관리자	
								12209	그 외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11	연구 관리자	13111	인문과학 연구 관리자	5
								13112	사회과학 연구 관리자	
								13113	생명 및 자연과학 연구 관리자	

14-2 퇴직에 따른 학생 보호(재교육형)

1. 퇴직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산업체의 소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대학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산업체의 소속직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학에서도 입학취소 또는 제적되어야 하나, 퇴직의 사유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대학의 해당 계약학과 또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교육을 받고 졸업이 가능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입학 취소 및
제적 처리</td><td colspan="3">• 학생이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td></tr>
<tr><td>계약학과
학생신분 유지</td><td colspan="3">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은 ①, ②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의 전체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 취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받게 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th></tr>
<tr><td rowspan="2">이수학점
취득율</td><td>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td><td>•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
• 필요경비는 학생이 부담</td></tr>
<tr><td>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한 경우</td><td>•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td></tr>
<tr><td>잔여교육</td><td colspan="2">• 계약학과에서 담당</td></tr>
</table>
</td></tr>
</table>

14-3 채용포기 및 퇴직에 따른 학생 보호(혼합형)

※ 혼합형 계약학과의 학생 보호는 채용조건형 과정, 채용조건형 과정 이수 후 재교육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재교육형 과정으로 전환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1. 채용조건형 과정의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퇴직 등)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용 포기 요건 검토

□ 혼합형 계약학과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채용조건형)로 입학하여 법 제8조제1항제2호(재교육형)로 전환하는 유형이므로 채용조건형 과정에서 채용약정을 맺은 산업체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채용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 필요

○ 채용확약서 및 규정 제26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용약정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해지 요구를 받아주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채용을 약정한 산업체가 도산, 인수합병 등 경영상의 문제일 경우에만 계약 해지 가능

1.2 채용 포기 시 학생 보호

□ 채용조건형 과정에서 학생이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하기 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름

○ 취업 전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업체가 채용을 포기한 경우의 학생신분 유지 조건 확인(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

- 계약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학적 유지 가능
- 계약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한 경우 → 계약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학적 유지 가능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 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재매칭 필수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중분류 77개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종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11	해수면 어업	03111	원양 어업
								03112	연근해 어업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기준으로 중분류 52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개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1	국회의원	6
								11102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 의원	
								11103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11104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1105	공공 기관 임원	
								11106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120	기업 고위 임원	11201	기업 대표이사	2
								1120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11	정부행정 관리자	12110	정부행정 관리자	1
						1212	경영 지원 관리자	12121	총무 및 인사 관리자	5
								12122	기획 관리자	
								12123	재무 관리자	
								12124	자재 및 구매 관리자	
								12129	그 외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1	마케팅 관리자	3
								12202	광고 및 홍보 관리자	
								12209	그 외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11	연구 관리자	13111	인문과학 연구 관리자	5
								13112	사회과학 연구 관리자	
								13113	생명 및 자연과학 연구 관리자	

2. 채용조건형 과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퇴직 등)

⑥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 혼합형 계약학과의 운영과정에서 학생이 채용조건형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5항을 따라야 함.

3. 재교육형 과정으로 전환한 이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퇴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⑦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3.1 학생의 자진 퇴사 등에 따른 처리

□ 학생이 채용조건형 단계를 이수하고 재교육형으로 전환한 후, 본인이 원하여 퇴직한 경우나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위와 같이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함

3.2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시

□ 학생이 채용조건형 단계를 이수하고 재교육형으로 전환한 후, 학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위와 같이 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재교육형에 해당하는 제26조제2항~제4항을 적용함

구분	내용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리	• 학생이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계약학과	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학생신분 유지</td><td>
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은 ①, ②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의 전체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 취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받게 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th></tr>
<tr><td rowspan="2">이수학점 취득율</td><td>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td><td>•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
• 필요경비는 학생이 부담</td></tr>
<tr><td>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한 경우</td><td>•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td></tr>
<tr><td>잔여교육</td><td colspan="2">계약학과에서 담당</td></tr>
</table>
</td></tr>
</table>

○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중분류 77개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11	해수면 어업	03111	원양 어업
								03112	연근해 어업
						0312	내수면 어업	03120	내수면 어업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1	양식 어업	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기준으로 중분류 52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개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1	국회의원	6
								11102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 의원	
								11103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11104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1105	공공 기관 임원	
								11106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120	기업 고위 임원	11201	기업 대표이사	2
								1120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11	정부행정 관리자	12110	정부행정 관리자	1
						1212	경영 지원 관리자	12121	총무 및 인사 관리자	5
								12122	기획 관리자	
								12123	재무 관리자	
								12124	자재 및 구매 관리자	
								12129	그 외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2201	마케팅 관리자	3
								12202	광고 및 홍보 관리자	
								12209	그 외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11	연구 관리자	13111	인문과학 연구 관리자	5
								13112	사회과학 연구 관리자	
								13113	생명 및 자연과학 연구 관리자	

15 학생-산업체 재매칭

1. 학생-산업체 재매칭

□ 계약학과 학생이 퇴직이나 채용포기 시 계약학과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의 전체 이수학점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계약학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학과 유형에 따라 다른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구분	적용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재매칭 없이도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필요경비는 학생이 부담) • 학생이 재매칭을 원할 경우,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의 산업체와 재매칭 진행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구분	적용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 • 필요경비는 학생이 부담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의 이수학점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한 경우	•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계약학과 학생 신분 유지

□ 혼합형 계약학과

구분	내용
채용조건형 단계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매칭 절차와 동일
채용조건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재매칭
재교육형 단계	•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매칭 절차와 동일

16 교육과정 운영 완료

1. 교육과정 이수 완료 여부 확인

□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해당 학년도 입학생에 대해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교육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봄

□ 대학은 해당 학번의 교육과정 이수 완료 여부 확인

○ 교육과정의 이수가 완료된 학생 : 대학의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승인 후 학생에게 졸업 이수 통보

○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학생 명단 및 이수 현황 작성

2. 교육과정 추가 이수 필요 학생에 대한 조치

□ 대학은 추가 이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생과 산업체에 통보

□ 추가 이수에 대한 경비는 학생이 부담해야 함을 학생에게 통보

□ 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 : 모체학과에서 교육 담당

□ 해당 계약학과는 운영하나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 이수 구분에 따른 대체 교과목 지정(학칙에 근거하여 조치)

17 학생-산업체간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

□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채용 또는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계약학과 학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어야 함

□ 계약학과 설치 운영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체결 기준이 상이함

구분	내용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포함)	•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학생과 산업체 간의 근로계약 미체결 시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계약서에 작성
재교육형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소속직원으로 학생선발 단계 이전에 해당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직요건 : 계약학과 입학일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함 • 재직경력산정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의 재직경력만 인정
혼합형	• 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채용조건형에서 재교육형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심의	• (재교육형) 재직요건 기준 완화 :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 입학 전에 10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18 계약학과 운영 검토

1. 계약학과 운영 검토

□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학과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검토

□ 계속 운영할 경우, 산업체와 위탁교육에 대해 협의

□ 폐지할 경우,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 후 계약학과 폐지계획을 신고(다음 페이지 참고)

19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계약학과 설치·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③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요건 확인

□ 폐지 예정일(해당 학년도 개시일) 기준으로 신입학생 및 재학생이 0명인 경우, 반드시 계약학과 폐지계획을 신고해야 함

2. 제출양식 및 작성 요령 확인

□ 대학이 계약학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규정 제10조제3항)

○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3])과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확인

-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1부
- 첨부서류: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학교규칙 개정안 1부,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 작성

□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양식(규정 [서식 3])은 다음과 같이 크게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과 신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에 대해서 ①~⑦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① 계약형태 :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의 3개 중 해당사항에 √체크 (단독계약은 산업체가 1개일 때, 공동계약은 산업체 또는 대학이 2개 이상일 때, 제3자계약은 사업주 단체와 계약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명 : 대학명을 기재(예: OOO대학교)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3] (제10조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기관명	❶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❷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❸
	계약학과·학부명 ❹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❺ 참여 기관 수 : 개 ❻ 참여 기관 정보 :
	유형 :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계약정원 ❼	
신고내용	❽ 계약학과·학부 운영 기간	
	- 설치일 : - 폐지 예정일 : - 운영 기간 : *00년 00월*	
	❾ 학생 현황	
	-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등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등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	
	❿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③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 대학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되, 별도의 캠퍼스로 운영하는 경우 캠퍼스의 주소를 기재
- ④ 계약학과·학부명 : 폐지하고자 하는 계약학과 또는 학부명 기재

- ⑤ 참여 기관 수와 참여 기관 정보 : 폐지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의 수를 기재
- ⑥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양식을 활용하여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기관 소재지를 작성
- ⑥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의 [별표 1]을 참고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
- ⑦ 유형 :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중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혼합형의 경우 채용조건형에 체크

○ 신고내용에 대해서 ⑧~⑩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 ⑧ 계약학과·학부 운영 기간
  - 설치일 : 계약학과의 최초 설치일을 작성
  - 폐지 예정일 : 폐지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의 폐지 예정일 작성
  - 운영 기간 : 설치일로부터 폐지 예정일까지의 전체 운영 기간을 작성
- ⑨ 학생 현황
  -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를 작성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를 작성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재학생이나 재적생이 있는 경우 인원수를 기재하고, 재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⑩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실제 폐지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4.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작성(첨부서류 1)

□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는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및 작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하기를 권함

○ 계약학과 폐지 개요

- ① 계약학과·학부명 : 신고서의 ④와 일치하게 기재
- ② 계약학과·학부 영문명 : 학칙에서 정한 영문명 기재
- ③ 모체학과명: 해당 계약학과의 기반이 되는 학과명 기재

〈예시 양식〉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 계약학과 폐지 개요

① 계약학과 · 학부명			③모체학과명	
②계약학과 · 학부 영문명			④ 학위명	
⑤ 운영 기간	최초 설치일	20 년 월 일	⑥ 설치 유형	☐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 계약정원
	폐지일	20 년 월 일		
⑦ 입학 구분		☐ 신입 ☐ 편입	⑧ 계약 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
⑨ 입학정원		00명 (정원내 0명, 정원외 00명)	⑩ 학습구분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주간 ☐ 야간 ☐ 주말
⑪ 입학생 수 (연도별)		*총 입학생 수 기재 후 최근연도순으로 연도별 입학생 수 기재*		
⑫ 졸업생수 (연도별)		*총 졸업생 수 기재 후 최근연도순으로 연도별 졸업생수 기재*		
⑬재학생 또는 재적생 수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 해당없음 등*		
⑭ 참여 기관 수			⑮ 교육장소	
⑯ 참여 기관명		*운영기간동안 참여한 모든 참여 기관명 기재(중도이탈기업 포함, 중복 제외, 별지 사용 가능)*		
⑰ 폐지 사유 (간략히)		*간략히 기재 후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		

- ④ 학위명 : 학칙에 기재된 학위명 기재(예: 공학사, 이학석사 등)

- ⑤ 운영기간 : 신고서의 ⑧과 일치하게 최초 설치일과 폐지(예정)일 기재
- ⑥ 설치유형 : 신고서의 ⑦과 일치하게 기재
- ⑦ 입학구분: 신입 또는 편입 중 선택하여 체크
- ⑧ 계약 형태 : 신고서의 ①과 일치하게 체크
- ⑨ 입학정원: 해당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기재하고, 정원 내, 정원 외로 구분하여 인원수 추가 기재
- ⑩ 학습구분 : 교육과정 운영 시 교과목 개설을 주간, 야간, 주말 중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시 모두 체크
- ⑪ 입학생 수 : 총 입학생 수를 작성한 후, 최근 연도순으로 연도별 입학생 수 작성
- ⑫ 졸업생 수 : 총 졸업생 수를 작성한 후, 최근 연도순으로 연도별 졸업생 수 작성
- ⑬ 재학생 또는 재적생 수 : 폐지 후의 재학생과 재적생 수 작성, 재학생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⑭ 참여 기관 수 : 신고서의 ⑤와 일치하게 기재
- ⑮ 교육장소 : 교내인지 교외(이동수업)인지 기재
- ⑯ 참여 기관명 : 신고서의 ⑥과 일치하게 작성하되, 중도이탈 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 ⑰ 폐지 사유 : 신고서의 ⑩과 같이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 계약학과 폐지 사유
-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되, 특정 사업 등의 지원 종료에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 작성

○ 졸업생 현황
- 운영 기간의 모든 졸업생을 기재하고, 연도별 졸업생을 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연도별, 학번별 졸업생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시

○ 재학생 학사관리 계획
- 폐지 후에도 재학생이 있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5조(계약학과 폐지 등)를 준수하여 학사관리 계획 작성
- 모체학과에서 잔여 교육을 진행하되, 졸업학과는 계약학과로 기재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5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기관장 직인 날인 및 제출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대학의 총장으로 기재

□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

20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1. 재직 현황 확인

□ 대학은 매 학기 개시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산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학과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함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일명 산재보험)
- 고용보험

21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1. 재직 현황 확인

□ 대학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8월 말)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산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학과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함

[별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별표 및 서식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별표 1] (제32조제2항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별표 2]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계약학과 운영 제한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1] (제10조 관련)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2] (제10조 관련) 계약학과등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3] (제10조 관련)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현행) [서식 1] OO대학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4] (제13조 관련)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5] (제20조 관련)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예시)

□ <첨부 1>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예시)

□ [붙임] 전공분류체계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별표 1] (제32조제2항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별표 2]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계약학과 운영 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모집 정지 및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학생모집 정지 및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모집 정지 및 설치제한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중복 적용하여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한기준은 1학년도(1년)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운영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바.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의 요구 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교육기관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산업교육기관 1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2년 계약학과 학생모집 정지 및 신규설치 제한

3.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년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년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년 계약학과 참여 및 신규설치 제한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1] (제10조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table>
<tr><td rowspan="4">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td><td colspan="2">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td></tr>
<tr><td>산업교육기관명</td><td>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td></tr>
<tr><td rowspan="2">계약학과·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td><td rowspan="2">-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td></tr>
<tr></tr>
</table>

<table>
<tr><td rowspan="8">기본
정보</td><td>유형</td><td>입학정원</td><td>계약기간</td><td>취득학위</td><td>신/편입</td></tr>
<tr><td>[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td><td>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계약학과·학부 정원: 명</td><td>2023. . . ~
2023. . .</td><td>예) 산업학사, 공학석사</td><td>신입과정/
편입과정</td></tr>
<tr><td>[ ] 계약정원</td><td>일반학과·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td><td>2023. . . ~
2023. . .</td><td>예) 산업학사, 공학석사</td><td>신입과정/
편입과정</td></tr>
<tr><td colspan="5">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5">계약학과·학부 경비 부담 비율</td></tr>
<tr><td>구 분</td><td>참여 기관 부담</td><td>외부기관 지원</td><td>대학 자체 감면</td><td>학생 부담</td></tr>
<tr><td>등록금</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 경비</td><td>%</td><td>%</td><td>%</td><td>%</td></tr>
<tr><td>경비 총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td></tr>
<tr><td colspan="5">비고: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td></tr>
</tabl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2] (제10조 관련)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계약학과 기본정보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모체학과 명 / 정원 000학과 / 00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계약학과·학부 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 ] 계약정원	일반학과·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학과·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변경 신고 내용

○ 변경 항목 :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신고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3] (제10조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table>
<tr><td rowspan="4">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td><td colspan="2">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td></tr>
<tr><td>산업교육기관명</td><td>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td></tr>
<tr><td>계약학과·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유형 :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계약정원</td><td>-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신고
내용</td><td colspan="2">계약학과·학부 운영 기간</td></tr>
<tr><td colspan="2">- 설치일 :
- 폐지 예정일 :
- 운영 기간 : 00년 00월</td></tr>
<tr><td colspan="2">학생 현황</td></tr>
<tr><td colspan="2">-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폐지 사유</td></tr>
<tr><td colspan="2">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td></tr>
</tabl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없 음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행) [서식 1]

○○대학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본현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신입/편입)*
입학정원		**재학생 수**	
학위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설치운영기간**	*2015.03.01.~ 2019.02.28.(4년)*
모체학과명		**모체학과 입학정원**	
계약유형	*단독계약/공동계약/3자계약*	**참여 산업체 수**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 %, **외부기관** 지원 %, **대학 자체감면** %, **학생부담** %		
산업체 명	*별첨가능*		

구분	자체점검 항목		자체점검 결과
산업체 계약자격 등	◦ 상시 근로자 수 충족여부(5인이상)		*00명*
	◦ 사업주 단체 계약 시	- 사업주 단체의 등록(국가/지자체) 여부	*등록확인*
		- 계약 산업체의 단체가입 확인 여부	*가입확인*
		- 사업주 단체가 법인인지 확인 여부	*이상없음*
	◦ 3자계약 체결 시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공동계약 체결*
	◦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인지 여부		*유사분야 확인*
	◦ 대학과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동일권역 위치*
학생현황 (입학요건 등)	◦ 10개월 이상 재직요건		*충족*
	◦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이상없음*
	◦ 4대보험 납부 확인 여부(4개 모두 확인)		*모두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결과		*확인결과 이상없음*
	◦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고지 완료*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00명*
	- 계약학과 입학 후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자		*00명*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설치*
	◦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준수여부		*준수*
	◦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지 여부		*정기적 협의 실시*
학사관리	◦ 매 시간 출결확인을 하고 있는지 여부		*실시*
	◦ 출석수업 비중(50%이상) 준수 여부		*이상없음*
	◦ 수업시간 단축여부 및 휴강 시 보강 실시여부		*해당없음*
	◦ 출석일수 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 여부		*해당없음*
	◦ 전임교원 수업참여(30% 이상) 충족여부		*%*
	◦ 학생 학업상황 등의 산업체 고지 여부		*매학기 고지*
학칙 및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의 학칙 기재사항 준수 여부		*준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의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준수*
	◦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학칙에 숫자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숫자 명시*
	◦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계약기간 명시*
	◦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수업연한 이상*
산업체 부담	- 산업체에 직접 납부요청 여부(공문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시행*
	-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시행*
	- 학생이 전체등록금 선납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00%*
	- 현물로 상계한 금액이 필요경비의 30% 미만인지 여부		*00%*
	- 현물 인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감가상각률 적용여부		*적용/해당없음*
외부 교육장소	- 교육장의 산업체 소유여부(임차포함) 및 교육여건의 적정성 확인		*이상없음*
	- 산업체의 무상제공 여부		*무상제공*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월 일

작성자 : ○○○ 대학교 직위 ○○○ 서명

확인자 : ○○○ 대학교 총장 ○○○ 직인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4] (제13조 관련)

OO대학교 OOO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산업체	① 국가(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②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③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중복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3자 계약 체결인 경우, 실제 참여하는 해당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공동계약 체결, 공동계약 미체결 작성 / 공동계약 미체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 또는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 분야, 비유사 분야 작성 / 비유사 분야의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대학과 산업체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권역이 아닌 경우, 권역제한 완화에 대한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 관리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재교육형 계약학과) ☞ *충족, 미충족, 대학원과정(해당없음) 작성*			
	- 재직요건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사항 확인 여부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확인)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완료, 고지하지 않음 작성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의 인원이 일반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인지 확인 여부 ☞ *일반학과 입학정원 00명, 계약정원 0명 해당 인원수 작성*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운영 위원회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미설치 작성 / 미설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준수 여부(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연 1회 이상) ☞ *협의, 협의하지 않음 작성 /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신고 절차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변경계획 신고 준수 여부(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기간 종료, 재학생이 없는 경우 등 폐지신고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폐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 ☞ *개정, 미개정 작성/ 미개정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사 관리	출석수업 비중 준수 여부(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참여준수 여부(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의 학업상황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통보, 미통보 작성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미규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비중이 졸업학점의 50%를 초과하는 지 여부 (원격대학 제외) ☞ *미실시(해당없음), 초과, 초과하지 않음 / 초과하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 *운영, 미운영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학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인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타 권역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잘 갖추었는지 확인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비 확인, 구비하지 못함 작성 / 시설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장의 여건 확인, 본교와 이동수업 장에서의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미운영(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 이동수업장의 산업체 무상제공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무상, 비용지급 여부 작성/ 비용지급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실습 실시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실시(표준, 자율현장실습 구분) 작성*			
	– 현장실습 운영 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준수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준수, 준수하지 않음 / 미준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여부 ☞ *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미구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현장훈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부여, 미부여 작성 /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미초과, 초과 부여 작성 / 초과하여 학점을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 학점을 부여한 경우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부여되었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칙 및 계약서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칙, 운영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준수, 미준수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 *명시, 명시하지 않음 작성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이상, 이하 작성 / 이하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부담금	산업체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산업체에 별도 청구하였는지 여부(공문 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 *청구, 청구하지 않음 작성 /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매학기 산업체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 *확인,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 *개별 정산(1명이라도 있을 시 작성), 해당 없음 작성 / 개별 정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산업체 등 부담 비율 작성 / 50% 미만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현물부담 비율이 필요경비의 30% 초과 여부 ☞ *현물부담 비율, 해당없음 작성 / 30% 초과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등에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지 여부 ☞ *안내, 안내하지 않음 작성 /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대학교 직위 ○○○ 서명

확인자 : ○○○ 대학교 총장 ○○○ 직인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식 5] (제20조 관련)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예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점검 항목(조문)	점검 결과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산업체의 시설 제공 확인(동의)서 첨부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1** • 해당 유형 작성 *(예: 제12조의 공동계약, 3자계약)* ※ 유형 증빙자료 첨부 (협약서 사본 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충족(00km) / 미충족 택 1** ※ 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승인일자 작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00개 과목**(00학점, 00%) / **전체 00개 과목**(00학점, 100%)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비고 : - *[첨부 1] 계약학과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 - *[첨부 2] 협약 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 무상 제공 확인(동의)서* - *[첨부 3] 협약(계약) 체결서 사본* - *[첨부 4] 000 사업 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첨부 1>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예시)

학과(전공)	○○학과	학위과정 (학사,석사 등)	석사	[1]학문 계열	인문
계약 기간	2022.3.1.~2026.2.28.	[2]동일 권역 여부	○ / X ('00.00.00., 교육부 승인)		
학 교	주소 기재	이동수업 장소	주소 기재		
[3]이동수업 필요성	○ 작성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4]교과목 명 (전체)	개설 학년 /학기	이수 학점	필수 /선택	[5]담당 교원	[6]수업 방식			[7]이동수업			
					출석	원격	현장 실습	신청	수업 필수 기자재 등	학교에서 보유한 기자재 등 표시	산업체에서 보유한 기자재 등 표시
○○세미나	1학년 / 1학기	3	필수	김0○ (○○학과 부교수)	○ (100%)			○			
	2학년 / 1학기	2	선택	최○○ (○○학과 시간강사)	○ (80%)		○ (20%)	○			
…								X			
…											
총 00개 과목	총 00학점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	-	-	-	이동수업 신청 총 00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작성방법】

가. (공통)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표 속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나. [1]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전공) 분류 체계'를 준용하여 대계열-중계열 작성(붙임 참조)

다. [2]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 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일자 기입

라. [3]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작성(구체적 데이터 활용 가능,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 ① 일반대학이 보유하기 어려운 산업체 특수 장비 등 활용
> ② 산업체 내 보안문제로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 ③ 기타

마. [4] 이동수업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할 교과목 전체 기재

바. [5]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 성명과 소속 학과명, 직급 기재

사. [6] 교과목별로 출석, 원격, 현장실습 등 수업 방식 체크, 비중 작성

아. [7] 학교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등을 산업체에서 보유한 경우 작성,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교과목 별로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 장비 등을 작성하고, 해당 기자재 등을 학교 및 산업체 중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 지 표시)

[붙임] 전공분류체계

대계열	중계열	대계열	중계열
인문계열	언어・문학	공학계열	건축
	인문과학		토목・도시
사회계열	경영・경제		교통・운송
	법률		기계・금속
	사회과학		전기・전자
교육계열	교육일반		정밀・에너지
	유아교육		소재・재료
	특수교육학		컴퓨터・통신
	초등교육		산업
	중등교육		화공
자연계열	농림・수산		기타
	생물・화학・환경	예체능계열	디자인
	생활과학		응용예술
	수학・물리・천문・지리		무용・체육
의약계열	의료		미술・조형
	간호		연극・영화
	약학		음악
	치료・보건		